

하도급직불제 갈등 심화

종합건설 탄원서 제출·전문건설은 환영

속보= 정부가 '하도급직불제'를 확대, 시행키로 하자 대한건설협회가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논란(본지 4월11일자 7면)이 확산되고 있다.

17일 도내 건설업계에 따르면 대한건설협회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7일 발표한 '하도급 대금 직불제' 확대 시행 철회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정부에 제출했다.

건설협회는 탄원서에서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체불의 80% 이상이 건설근로자와 장비업자 등에서 생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대책이 빠져 있다"며 "원도급업체에서 하도급업체로 대금 직불이 이뤄지더라도 실질적인 체불방지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특히 "하도급업자가 대금을 수령한 후 경영 악화 등을 이유로 장비업자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례가 많다"며

하도급직불제 확대시행 철회를 요구했다. 하지만 전문건설업계는 '하도급대금 직불제' 확대를 크게 환영하고 있다.

대한전문건설협회는 "대기업의 대금 미지급·지연지급, 어음 및 대불변제 지급 등 불법하도급 대금 지급행위가 사전에 차단,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가 조기에 정착될 것"이라며 "원도급사의 파산 등에 따른 하도급사의 연쇄부도도 방지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강원발전연구원 관계자는 "하도급대금 미지급이라는 근본적인 원인때문에 하도급직불제가 도입된 것"이라며 "제도적 장치안에서 원청과 하청업체간 하도급대금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이 우선 마련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안은복 rio@kado.net

아하! 그렇구나

직접공사비는 증액되었으나 전체 하도급대금은 감액된 경우 부당 하도급결정에 해당되나



하도급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지명경쟁입찰을 실시한 후 최저가로 입찰한 을 주식회사와 추가협상을 통하여 직접공사비는 증액하였으나 간접공사비를 감액하여 최저기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제7호의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에 해당하는 것일까?



직접공사비가 증액되었다 하더라도 전체 하도급대금이 감소하였다면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에 해당합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이와 관련된 사안에서 '경쟁 입찰에 의한 하도급계약에서 원사업자가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이상 그 과정에서 부정한 방법이 사용되었는지에 관계없이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직접공사비가 증가하였더라도 간접공사비 및 전체 하도급대금이 감소하였다면 실질적으로 수급사업자의 이익이 감소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반면, 하도급금액 인하를 통하여 도급사업자의 이익을 늘리기 위하여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어 최저가 입찰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입찰을 통하여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후 추가협상을 하였고, 그 과정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사하였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4.09.05. 선고 2013누33002 판결 참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은 '하도급대금'을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을 용역수행하여 원사업자에게 납품 등을 한 것에 대한 대가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직접공사비와 간접공사비를 구분하지 않고 있으므로 하도급대금을 직접공사비로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직접공사비만으로 하도급대금이 감액되었는지를 판단한다면 원사업자가 간접공사비 감액을 통하여 전체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할 소지가 있어, 부당하게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정착시키려는 입법취지에 어긋나게 될 뿐만 아니라, 직접공사비가 증가하였더라도 간접공사비 및 전체 하도급대금이 감소하였다면 실질적으로 수급사업자의 이익이 감소한 것으로 볼 수 있고, 향후 이와 같이 낮게 책정된 재료비와 노무비를 기준으로 하도급대금이 다시 결정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실질적으로 수급사업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였던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동원 법무법인 이강 변호사

